

##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

제정 2012년 10월 12일 조례 제1246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임무)**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
3. 각종 축제 등 문화·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
4.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

**제3조(위촉)**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
2. 시의 경제적,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
3.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
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할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.

**제4조(해촉)**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**제5조(품위유지)**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##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

**제6조(보상)**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제 호
위 축 패
성 명
귀하를 「오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」 제3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·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
년 월 일
오 산 시 장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직인</span>

